

2018년 ‘추석 명절 청렴주의보’ 발령

<2018. 9. 11. / 감사실>

민족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전직원 등이 직무관련자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,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"부패행위 ZERO 청렴공단 실현" 목표 달성을 위하여 주의보 발령

- 발령대상: 공단 전직원(기간제 포함) 및 강사
- 발령내용: ‘직무관련자로부터 명절 선물 등 수수’ 금지
- 발령기간: 2018. 9. 11. ~ 30.
- 관련규정
 -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
 - 임직원행동강령 제22조(금품 등의 수수 금지)
 - 임직원행동강령 제33조(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)
- 금품 등 수수시 대응요령



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·의사표시를 받은 경우
(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안 경우)

소속기관장에게 **지체 없이 신고** 해야 하고



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자에게
즉시 반환 혹은 **거부 의사 표시** 하거나



받은 금품 등이 멸실·부패·변질 우려 등이 있는 경우
소속기관장에게 **인도** 하여야 한다